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63

제출년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4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가 안 되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조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,
- 조례에 누락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,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을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요금 및 가산금(안 제3조)
 -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, 징수요금의 가감
- 나. 공영주차장의 표시(안 제5조)
-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방법
- 다.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(안 제6조)
 -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및 납부금액 산정 등
- 라. 주차구획선의 표시(안 제10조)

- 주차방법 및 주차구획선 배치 기준 지정
- 마.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(안 제11조)
-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기준 바.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(안 제12조)
 -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
- 사.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(안 제13조)
 -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인정범위, 당해 시설물 설치지역
- 아.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(안 제14조)
 -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부하고 설치의무 면제
- 자.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(안 제15조)
 - 부설주차장의 4퍼센트 이상의 구역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차장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(1) 입법예고(2013.08.02 ~ 2013.08.22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완료, 규제사무 없음

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. 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 노외주차장(이하 "민영주차장"이라 한다),「자연공원법」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·도·군립공원의 주차장,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,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.

- ②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, 해당 장애인이 탑승(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경감할 수 있다.
- 1의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경감할 수 있다.
- 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,000cc미만의 경 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 경감할 수 있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 제9 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4조(주차거부금지)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.
 - 1.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2.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

- 3.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
- 4. 노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
- 제5조(공영주차장의 표시)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, 이용 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.
 - 1.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 - 2.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
 - 3. 주차장의 이용시간
 - 4. 기타 필요한 사항(허가번호, 관리자 주소·성명, 주차제한 차량 등)
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, 이용에 관한 안내표
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.
 -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 - 2.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- 2.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, 납부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 재산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, 납부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.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.
-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 차거부, 부당요금 징수,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7조(주차장의 설치등)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해당 도시 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. ②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

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

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(노상·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) ①노상·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 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1.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
- 2.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
- 3.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
-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.
- 제9조(이용제한)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,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 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,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 조제1항에 따른다.
 -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 - ④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

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제11조(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 ①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- 2. 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
-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 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
-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
- 5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- 6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5 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(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, 사업부지면적의 0.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. 다만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.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.

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

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"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. 다만, 「건

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(연면적 합계가 10 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 및 농·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
- 세13조(무실수자상의 인근설시) 법 세19조세4양에 따라 시설물의 무시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
 - 2.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(행정리를 말한다)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로 한다.
- 제13조의2(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)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- 제14조(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)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 기 전까지 50퍼센트, 준공검사(건축물인 경우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 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) 신청 전까지 50퍼센트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

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설물의 설치 부지와 접하여 있는 도로가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등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
- 2. 시설물의 설치 부지가 고산지대 또는 계단형 지대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
- 3.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
 - 가.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로서 개설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도로
 - 나. 도시계획 구역의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6미터 이하인 도로(단,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.)
- 제14조의2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)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 - 1.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 - 2.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설치비용(토지가액과 공사비를 포함한다)을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.
 - 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

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- 4. 공사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(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
- ②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.
- 1.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- 2.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.
- 3. 토지가액은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- 4.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2제곱미터로 한다.
- 제14조의3(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) ①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 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1일 2시간 징수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.
 -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

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
- 제15조(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) ①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구분·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 수의 4퍼센트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
 - 2.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
 - 3.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
 -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하고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한다.
- 제16조(관리비)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 으며,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- 제17조(과징금 처분) ①법 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, 과징금의 금액,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
-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며,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⑤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, 「건축법」 등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따른다.

[별표 1]

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

(제3조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분	차종별	1회주차권	16) スションコ	월정기주치권	
70	/ 사랑길	1구획당 30분 기준	1일 주차권		
1.77	대형차량	700	6,000	70,000	
1급지	소형차량	500	4,000	50,000	
9.ユョ)	대형차량	500	4,000	50,000	
2급지	소형차량	300	2,500	30,000	

※ 대형차량: 2톤 이상 화물자동차,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

소형차량: 승용자동차, 2톤 미만 화물자동차,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

비고

- 1.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.
- 2.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,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.

가. 4월 ~ 10월 : 08:00 ~ 20:00

나. 11월 ~ 3월 : 09:00 ~ 19:30

3. 급지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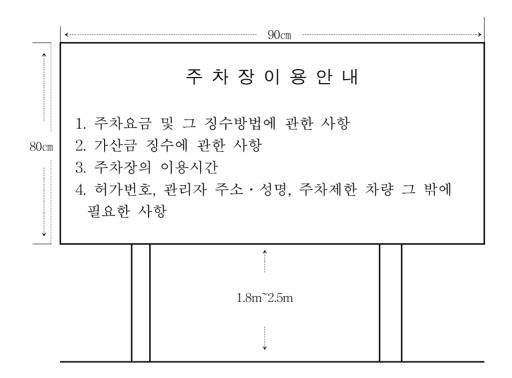
가. 1급지 : 읍· 면 소재지

나. 2급지: 1급지 이외지역

[별표 2]

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

(제5조제1항 관련)



비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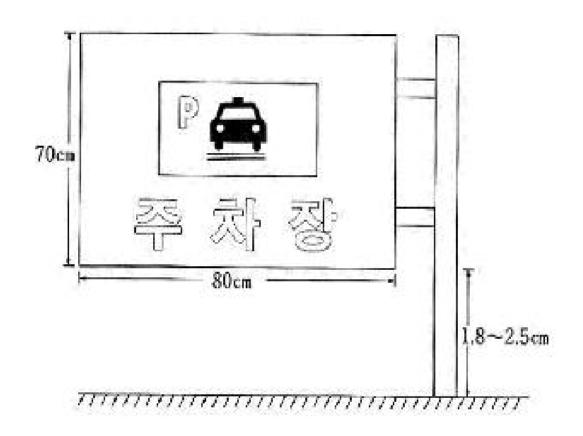
구분	ᆌㄹ	색 채			
⊤℃	재료	바탕	글씨(고딕)		
노상주차장	알루미늄	녹색	흰색		
공영노외주차장	알루미늄	녹색	흰색		
민영노외주차장	알루미늄	녹색	흰색		

※ 색채의 기준색,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.

[별표 3]

노외주차장 표지

(제5조제2항 관련)



비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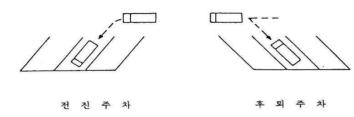
구분	재료	규격	색채		
丁正	/ 개요 	11 4	바탕	글씨(기호)	
외부표지판	스테인레스	80×70	청색	흰색	
내부표지판	스테인레스	30×25	흰색	청색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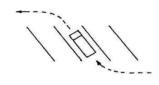
※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·기호 등에는 야광반사 처리를 함.

[별표 4]

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(제10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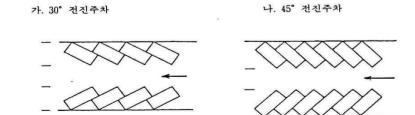
1. 주차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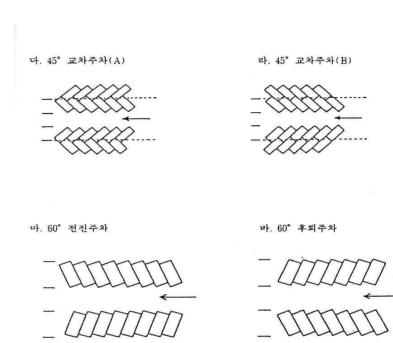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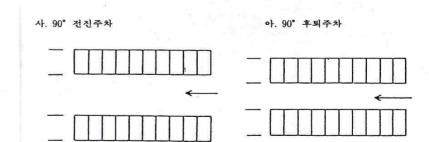


전진주차 전진발차

2. 배치기준







[별표 5]

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(제12조제2항 관련)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위락시설	o 시설면적 100㎡당 1대(시설면적/100㎡)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공공용시설중 방송국	o 시설면적 150㎡당 1대(시설면적/150㎡)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 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 을 제외한다), 제2종 근린생활 시설, 숙박시설	o 시설면적 200㎡당 1대(시설면적/200㎡)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o 시설면적 100㎡ 초과 150㎡ 이하: 1대 o 시설면적 150㎡ 초과: 1대에 150㎡를 초과 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[1+{(시설면 적 - 150㎡)/100㎡}]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중 오피스텔	o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.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 적 산정방법을 따른다.
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o 골프장 : 1홀당 10대(홀의 수 × 10) o 골프연습장 : 1타석당 1대(타석의 수 × 1) o 옥외수영장 : 정원 15인당 1대(정원/15인) o 관람장 : 정원 100인당 1대(정원/100인)
7. 그 밖의 건축물	o 시설면적 300m²당 1대(시설면적/300m²)

비고

- 1.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가.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공중화장실,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 - 나. 종교시설중 수도원, 수녀원, 제실 및 사당
 - 다. 동물관련 시설중 축사
 - 라. 식물관련 시설
 - 마. 방송, 통신시설중 송 · 수신시설 및 중계시설
- 2.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,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,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.
- 3.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(지적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전용건 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4.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. 다만,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는 대수로 한다.
- 5.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(이하 "증축하는 부분"이라 한다)"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

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.

- 6. 설치기준(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수(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.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.이 경우 합산한 수가 0.5 미만인 때에는 0.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)가 0.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. 다만,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.
- 7.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. 다만,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(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8. 숙박시설(호텔, 관광호텔, 가족호텔,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)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·칵테일바·다실·연회실·휴게실 및 위락시 설을 말한다.
- 9.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,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 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.
- 10.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

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설주 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

(제14조의3제2항 관련)

(앞면)

	9cm —
	No.
	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
6cm	건축물위치 :
	사 용 자 :
	사용기간:
	이용주차장 :
	평창군수 인

바탕 : 하늘색, 글씨 : 검정색

(뒷면)

주 의 사 항

- 1.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2. 이 사용증의 분실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.
- 3.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 교부해 드립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

(제14조의3제2항 관련)

고지		건축물	현 황		비 용	비용납부의무자			무상사용기		
번호	위치	건 축	의무면	허 가	주 소	성명	주민등록번	납부금액	납부일	간	지정주차장
		연면적	제대수	년월일			호				

[별첨 2]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도시주택과장 박현창
연락처	(033) 330-2470

관계 법 령

주차장법

제7조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(荷役)을 위한 주차구획(이하 "하역주차구획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.

제8조(노상주차장의 관리)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,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,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.

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 ① 택지개발사업, 산업 단지개발사업, 도시재개발사업, 도시철도건설사업,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(이하 "단지조성사업등"이라 한다)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,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노외주차장의 관리)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 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,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(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·용도·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⑦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.
-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주차장법 시행령

제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 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·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·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8조(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)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·용도·규모 및 부설주차 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설물의 위치

나.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

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)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 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,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,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